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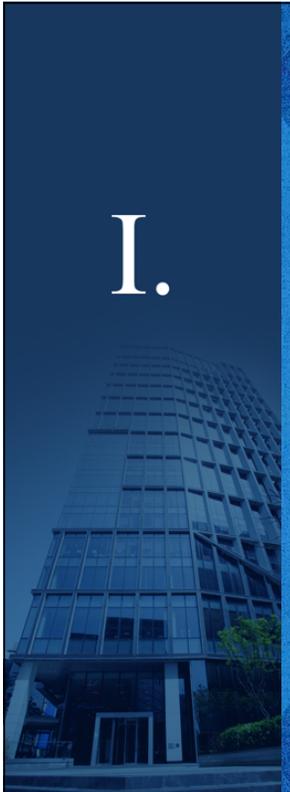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2021. 5. 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목 차

- I. 공시제도의 의미 및 도입배경
- II. 공시제도의 주요내용
- III. 공시제도의 특례규정
- IV. 기타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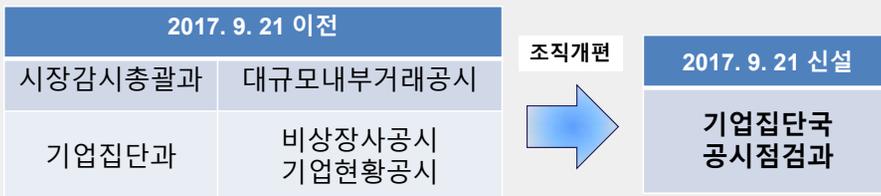
공시제도의 의미 및 도입배경

1. 공시제도 현황
2.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3.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란
4. 관련 법 및 규정
5. 공시규정 개정연혁

1. 공시제도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총 3개 공시제도를 운영 중

공시제도	근거	제정일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법11조의2	2000. 4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법11조의3	2005. 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법11조의4	2009. 7



2.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1

계열회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의 약화, 기업 집단전체의 동반부실초래** 등 국민경제적 피해가 큼

2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의 책임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

3

이러한 부당내부거래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은밀화 됨에 따라 **사후적인 조사·시정과 함께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대두에 따라 도입

5

3.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란

미리 이사회 의결
거친 후 공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과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6

4. 관련 법 및 규정

▶ 관련 법 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의2】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7조의8】

3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6호, 2020. 6. 19.】

4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8호, 2020. 6. 19.】

▶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법령자료 참조

7

5. 공시규정 개정연혁

▶ 1차 개정(2001. 7. 23)

항목	중전	개정
공시대상 회사 (제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기업집단 중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인 기업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
비금융·보험사의 단기금융상품 거래 공시기한 조정 (제9조제 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융·보험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융·보험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 만기와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한 경우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5항)
유권해석사항 규정화 (제4조제 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상품·용역거래를 공시대상에서 제외</u>

8

5. 공시규정 개정연혁

2차 개정(2002. 5. 6)

항목	종전	개정
공시대상 회사 (제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기업집단 중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5. 공시규정 개정연혁

3차 개정(2003. 6. 3)

항목	종전	개정
비상장회사 공시기한 완화 (제6조①, 제9조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 공시. 다만, 비상장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
비금융·보험회사 수익증권거래시 의결대상기간 조정 (제9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융·보험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한 경우 분기별로 일괄하여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융·보험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의결
유권해석사항 규정화 (제4③,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입전의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거래가 편입 후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공시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공시

5. 공시규정 개정연혁

▶ 4차 개정(2004. 12. 15)

항목	종전	개정
채무보증행위 공시대상 제외 (제4조①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외
부동산임대차 거래금액 산정 변경 (제4조②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환산보증금(월임대료를 부가가치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임대료 + 환산연간임대료 (보증금 X 이자율)
공시시기 명확 (제6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시기의 계산은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휴일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

11

5. 공시규정 개정연혁

▶ 5차 개정(2005. 3. 23)

항목	종전	개정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변경 (제2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자본총계에 대한 정의 명시 (제2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

12

5. 공시규정 개정연혁

▶ 6차 개정(2007. 7. 25)

항목	종전	개정
상품·용역거래 포함 (제2조 ②~③, 제4조①4호, 제4호②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공시 대상 거래는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공시 대상 거래에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 상품 또는 용역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임 거래금액은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

13

5. 공시규정 개정연혁

▶ 6차 개정(2007. 7. 25)

항목	종전	개정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제9조의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음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기 중이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

14

5. 공시규정 개정연혁

6차 개정(2007. 7. 25)

항목	종전	개정
유가증권의 거래금액 산정기준 변경 (제4조②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다만, 주식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유가증권 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결 근거조항 마련 (제5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이사회의 의결로 보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제393조의 2(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의 의결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 7차 개정('09. 8. 20)은 재검토 기한 명시(제15조)

5. 공시규정 개정연혁

8차 개정(2009. 12. 18)

항목	종전	개정
유가증권 담보제공 (제4조①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의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공시사항 추가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제4조⑤ 제1호 및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단가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5. 공시규정 개정연혁

9차 개정(2010. 6. 11)

항목	종전	개정
상품·용역거래 관련 공시대상회사 확대 (제2조③ 3호 및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인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에서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및 이의 <u>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u> (상법상 자회사의 경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의 회사에 한함)"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5. 공시규정 개정연혁

10차 개정(2012. 3. 26)

항목	종전	개정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변경 (제2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상품·용역거래 공시 거래상대방 범위 확대 (제2조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분의 20 이상
공시내용 추가 (제7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거래에 한함) 추가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제9조2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다만 이사회 의결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건별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 공시규정 개정연혁

11차 개정(2015. 3. 19)

항목	중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규정한 상품·용역거래 공시 제외 대상 통일 (제2조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회사의 법 제2조(정의)제1호3에 따른 자회사 또는 사업관련 손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제4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 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u>

5. 공시규정 개정연혁

12차 개정(2017. 8. 28)

항목	중전	개정
공시대상 회사 (제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5. 공시규정 개정연혁

13차 개정(2020. 6. 19)

항목	종전	개정
상품·용역거래 공시의무 제외 대상 축소 (제2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용역거래 공시대상회사 제외 대상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용역거래 공시대상회사 제외 대상 -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

II.

공시제도의 주요내용

1.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
2. 내부거래 개요
3. 거래금액 산정
4. 거래상대방
5. 대규모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
6. 이사회 의결 절차
7. 공시시기
8. 공시 주요내용
9. 주요내용의 변경

1.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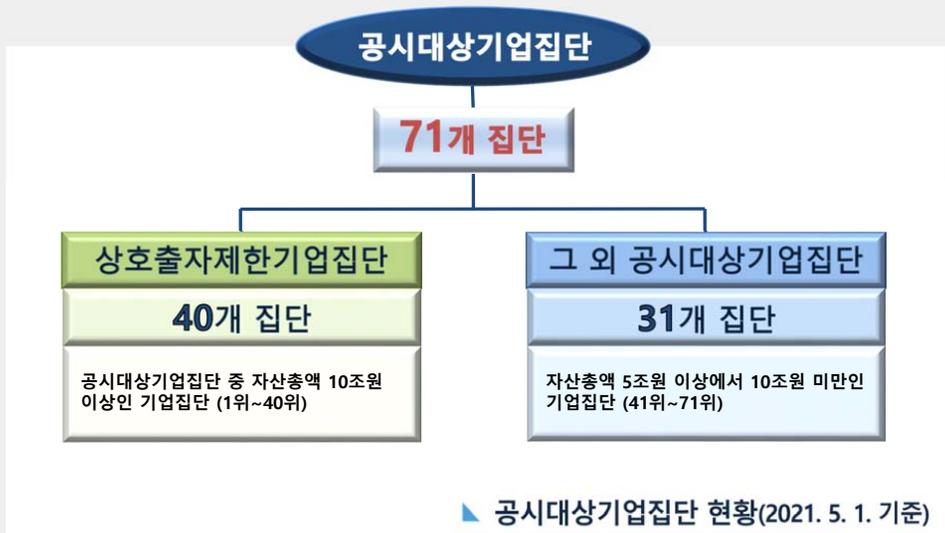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범위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함
 -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
- 연도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편입된 회사는 신규 편입된날부터 적용(공시규정 제4조③)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란?

지정일(매년 5. 1) 현재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신설법인은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①/동법 시행령 제21조 ①)

1.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2021. 5. 1. 기준)

2. 내부거래 개요

▶ 대규모 내부거래의 유형

자금거래란?

-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유가증권 거래란?

-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09. 12. 18 개정)

자산거래란?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자금, 유가증권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동산 임대차 거래도 포함

상품·용역 거래란?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상적 거래

25

2. 내부거래 개요

▶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

- MAX[자본금, 자본총계] X 5% 이상이거나
- 5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기준

- 자본금이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함
 -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봄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

26

2. 내부거래 개요(Q&A)

Q. 소속회사는 비영리법인(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출연할 계획임. 출연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였는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나?

A. 비영리 법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의 범위에 포함됨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다.목)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대해 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출연하는 소속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공시를 해야 함**

소속회사	비영리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비영리법인은 소속 회사가 아님)

27

2. 내부거래 개요(Q&A)

Q. 다음과 같은 재무상태에서 2021. 4. 1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하고자 할 때, 자본금 및 자본총계 기준금액은? [사업연도는 1.1 ~ 12. 31 이라고 가정]

자본금 변동내역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2020. 1. 1 기초	50억원	2020. 12. 31	400억원
2020. 12. 1(유상증자)	50억원		
2021. 2. 1(유상증자)	100억원		
2021. 4. 1(현재)	200억원		

• 2021. 3월 중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재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A. 자본금은 200억원, 자본총계는 400억원 기준으로 산정
(공시규정 제2조 제2항 하단)

자본금 변동내역

28

2. 내부거래 개요(Q&A)

Q. 4월 1일자로 존속법인과 2개의 신설법인으로 **회사가 분할할** 예정이다. 회사분할이후 각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거래금액 기준인 **자본총계**는?

A. 자본총계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회사분할기일 이후부터 분할이 일어난 연도 내에서의 자본총계는 회사분할 시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총3개사에게 **각각 분할되는 부분에 대한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판단**

2. 내부거래 개요(Q&A)

Q.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로 **편입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규모 내부거래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가?

A.

구분	편입이전	편입이후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주요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공시규정 제4조③)

3. 거래금액 산정

▶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거래유형별	실제 거래하는 금액
자금, 유가증권, 자산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
부동산 임대차	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 임대료(=보증금X이자율) ◆ 관리비는 제외 *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 (매년 개정)
담보제공	담보한도액
보험계약	보험료총액
상품·용역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 ◆ 부가가치세는 제외 * 기업회계기준으로 하되,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봄

3. 거래금액 산정(Q&A)

Q. 월 임대료 10억 원, 보증금 100억 원, 계약기간 2년의 부동산임대차 거래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위한 연간임대료와 환산연간임대료(보증금X이자율)의 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1.2% 적용)

A. 거래금액: 121억 2천만 원

산식: (10억 원 X 12개월) + (100억 원 X 1.2%) = 121억 2천만 원

- *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은 '연간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
- * 관리비는 거래금액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관리비는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로 판단

3. 거래금액 산정(Q&A)

Q.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계약체결 당시 1.2%였으나, 이후 법령개정으로 1.5%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이자율의 적용시점



1. 최초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변동한 경우 소급 적용 안함 (1.2%)
2. 계약이 변경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계약변경일 또는 계약연장일 기준 (1.5%)

3. 거래금액 산정(Q&A)

Q. 계열금융회사와 보험 및 퇴직연금 거래 시 공시시기 및 거래금액 산정 기준은?

A.

구분	공시시기	거래금액
보험료 총액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약정 계약시점	보험료 총액
퇴직연금(총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거래)	계열금융회사와 퇴직연금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5%이상인 시점	계열금융회사에 퇴직연금으로 50억 원 이상, 5%이상 납입금액*

*보험료총액 약정이 없는 퇴직연금보험의 거래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입금액의 누적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3. 거래금액 산정(Q&A)

Q.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예상 매출·매입거래 총액)이 회사의 자본 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거래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분기별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 (VAT별도)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계열회사와 아래와 같은 상품용역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A.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매출거래	30	20	60	40
매입거래	10	30	70	0
공시의무	X	●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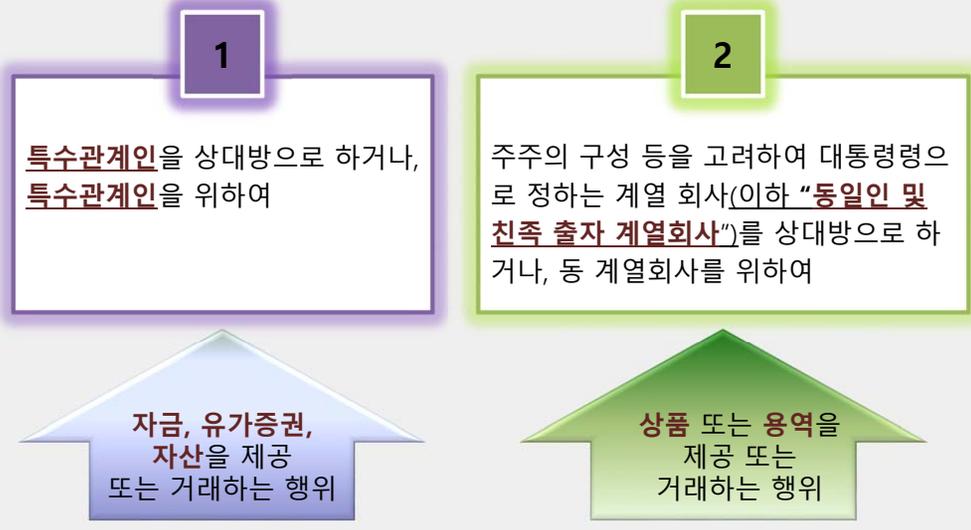
3. 거래금액 산정(Q&A)

Q. 분기중에 체결된 상품·용역의 총 계약금액은 대규모내부거래 해당하나 실제로는 계약기간(1년)에 걸쳐 계약이 진행되어 분기에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시여부의 판단기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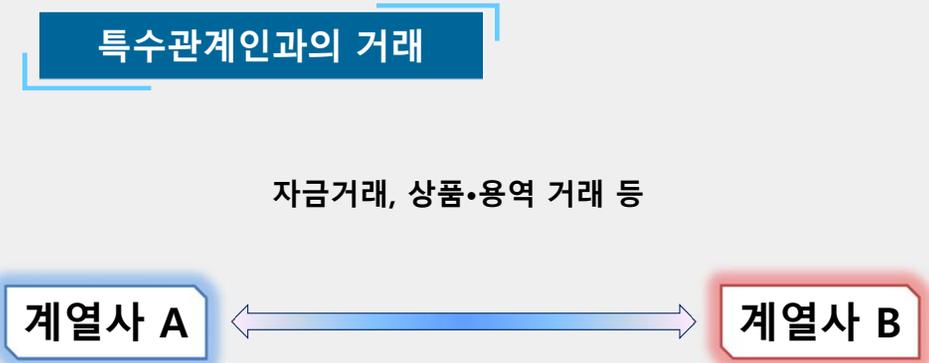
A.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계열회사와 상품·용역 거래를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총계약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더라도 **분기에 이루어진 금액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없음**

⇒ 상품·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4. 거래상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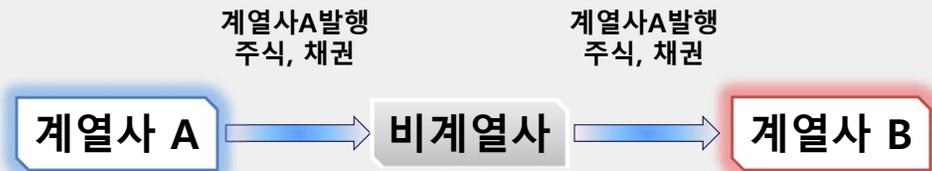
4. 거래상대방



※ 계열사A가 거래상대방인 계열사B와 자금의 차입·대여거래,
 상품·용역거래 등을 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

4. 거래상대방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 계열사 A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비계열사로부터 계열사 B가 매입하는 경우 계열사 B는 계열사 A를 위한 거래(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

4. 거래상대방 (자금, 유가증권, 자산)

특수관계인

- ▶ 당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하 "동일인")
- ▶ 동일인 관련자(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가.목~마.목)
 -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계열회사 (현재, 국외계열사와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유예)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의 임원 등

▶ 시행령 제11조 명시

4.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거래)

특수관계인 중에서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

-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이하 "A"라 함)
- ▶ 또는 그 계열회사(A)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

▶ 시행령 제17조의 8 제3항 및 공시규정 제2조 제3항 명시

41

4.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거래)

계열회사 개념(법 제2조 제3호)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하 "A"라 함)
- ▶ 또는 **그 계열회사(A)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

▶ 시행령 제17조의 8 제3항 및 공시규정 제2조 제3항 명시

42

4 상법상 자회사 개념(상법 제342조의2)

- ① 다른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이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모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까지만 "상법상 자회사" 개념으로 봄

- ▶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

▶ 시행령 제17조의 8 제3항 및 공시규정 제2조 제3항 명시

4.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거래)

특수관계인 중에서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

상품·용역거래 시 '내부거래 상대방회사'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 공시의무가 면제됨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 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ex. 공기업집단, 포스코, 케이티 등)

4. 거래상대방(Q&A)

Q. 공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외계열회사와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는지?

A. 현재, 국외계열사 공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개정 공정거래법 및 하위 규정이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국외계열회사간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유예**하고 있음

* 단, 소속회사가 **국외계열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음**

4. 거래상대방(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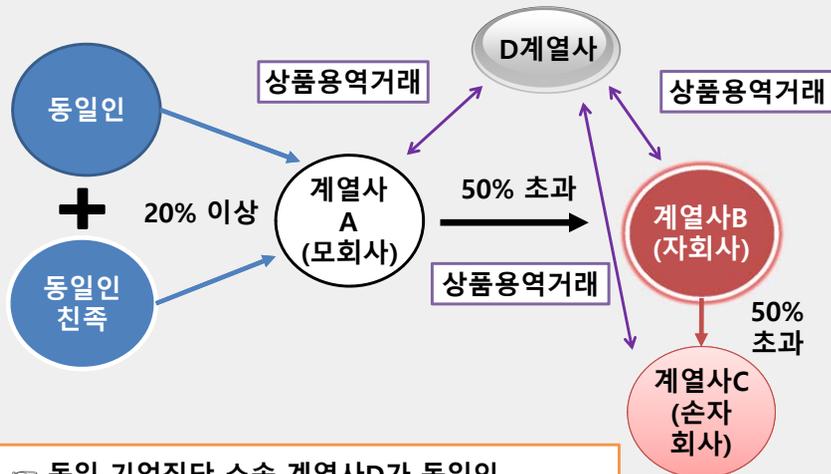
Q. A사와 B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소속회사이다.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20%를, B사 발행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다.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A사, B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여부?(매뉴얼 주요 사례 61번 관련)

A. **[판례로 인한 유권해석 변경]** A사는 소속회사로서 거래상대방인 B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발행주식의 5% 소유한 계열회사이며, **B사가 자신의 자회사이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발행주식의 20%이상 소유한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가 아니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없음**

* **자신을 제외**한 동일인 및 친족출자계열사의 상법상 자회사를 의미

B사는 소속회사로서 거래상대방인 A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발행주식의 20%소유한 계열회사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있음**

4. 거래상대방 (상품·용역거래)(Q&A)



☞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D가 동일인 친족출자 계열사 A,B,C와 각각 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D는 모두 공시의무 있음

4. 거래상대방 (상품·용역거래)(Q&A)

Q. A사, B사, C사는 계열회사이며 각 사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지분과 계열사간 지분보유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21년 5월부터 A사와 B사, B와 C사, A와 C사간 상품·용역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여부



- A.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 : B사
- ① A와 B사간 거래시 : A사 ⇒ ○, B사 ⇒ X
 - ② B와 C사간 거래시 : B사 ⇒ X, C사 ⇒ ○
 - ③ C와 A사간 거래시 : C사 ⇒ X, A사 ⇒ X

5.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 (공시 규정 제4조 제2항)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
-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봄

상품·용역거래?

-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
 -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상적 거래
- *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봄

5.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Q&A)



* A사, B사, C사는 동일기업집단 계열사, D사는 비계열사

5.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Q&A)

Q. D사가 2021.5.1. 비계열 금융회사 A, B로부터 계열회사인 C가 발행하였지만 발행일과 이자율이 상이한 CP액면 50억 원짜리를 각각 50억 원, 55억 원에 매수한 경우(D사는 금융회사이고 자본총액이 1,000억 원)

- A. 특수관계인(계열사C)을 위한 동일 성격의 금융상품(CP) 거래에 대한 거래조건(발행일,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 이 건은 거래조건이 다른 CP를 매수한 것으로 각각의 CP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D사는 공시의무 있음.**

* 유가증권은 액면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

51

5.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Q&A)

Q. D사가 2021. 5. 1. 비계열 금융회사 A, B로부터 계열회사인 C가 발행한 액면 40억 원인 CP(2016.1월 발행)와 액면 30억 원인 채권(2016.2월 발행)을 각각 42억 원, 32억 원에 매수한 경우 (D사는 금융회사이고 자본총액이 1,000억 원)

- A. 특수관계인(계열사C)을 위한 거래이나 거래대상의 종류(CP, 채권 등)와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다르므로 각각의 거래로 보아야 함.** 또한, CP 및 채권 매입금액이 각각 50억 원 미만이므로 **D사는 공시의무 없음.**

52

5.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Q&A)

Q. A회사가 계열사 B에 서울, 경기, 부산 3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1년 임대할 경우 거래금액 산정기준

(공시규정상 임대료가 서울 40억 원, 경기 40억 원, 부산 30억 원, A,B사 모두 자본총계가 1,000억 원 이라고 가정)

A. 거래상대방이 같더라도 임대목적물, 계약기간 등 거래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임대 목적물 별로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됨

⇒ 상기와 같은 경우 각 임대목적물별 거래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므로 모두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거래목적물 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거래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방식에 차이를 두더라도 **동일 거래여부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5.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Q&A)

Q. 동일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 및 조건, 내용으로 15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총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대여하는 경우 1건의 거래로 보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가능한지 여부

A.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자금 대여(차입)의 목적,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등 거래내용의 동일여부를 판단하여 동일거래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1건의 거래로 보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

- 거래금액은 전체 대여자금(150억 원)을 기재하고, 분할하여 집행하는 사유, 집행시기 및 금액을 기타란에 명시

5.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Q&A)

[2018년도 공시점검 결과 보도자료 내용 중]

□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면탈하고 시장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 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일명 ‘쪼개기’ 거래도 적발되었다.

○ A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하여 거래했다.

대여회사	차입회사	거래기간	거래금액(백만 원)
B사	C사	2017. 6. 2.~2017. 6.29.	1,800
		2017. 6. 5.~2017. 6.29.	1,600
		2017. 6. 7.~2017. 6.29.	1,500
		2017. 6. 8.~2017. 6.29.	1,700
		2017. 6.12.~2017. 6.29.	1,800
		2017. 6.13.~2017. 6.29.	1,600
합 계			10,000
D사	F사	2016. 12.6.~2017. 4. 4.	4,700
		2016. 12.7.~2017. 4. 4.	4,500
		합 계	9,200

5.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Q&A)

Q. A사와 B사는 계열회사였으나 B사가 2021.4.1. 계열 분리된 경우, A사와 B사 간 2021.3.31.과 2021.4.1. 대규모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여부

A.

2021.3.31.일자 거래 (계열분리 전 거래)	2021.4.1.일자 거래 (계열분리 후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에 있음

5.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Q&A)

Q. 계약조건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와 계약의 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 각각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해당 여부

A.

새로운 거래가 발생	
자동연장되는 경우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공시규정 제4조 ④)
계약의 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	○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대로 두는 경우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대로 두게 되어 계약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57

6. 이사회 의결 절차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상법[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 ▶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3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 한함

상법
제393조의 2
제1항

-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3항

- ▶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58

6. 이사회 의결 절차(Q&A)

Q. 1인 이사 회사인 경우 이사회 성립하지 않는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의결하고 공시를 해야 하는지?

A.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상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회사일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의무는 없으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는 있음**

* 공시기한은 거래행위를 하기 전(계약 전)

7. 공시 시기

주권상장법인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

VS

비상장법인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8. 주요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

공시 내용

- 거래목적
- 거래대상
- 거래상대방
- 계약체결방식
- 거래금액 및 조건
- 동일 거래 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

61

9. 주요 내용의 변경

- ▶ ① 내부거래 공시 대상 회사는
- ▶ ②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여야 함

주요내용의 변경이란? (공시규정 제8조 제2항)

- 거래목적의 변경
- 거래대상의 변경
- 거래상대방의 변경
단, (상호변경, 영업양수, 합병 등으로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의결은 제외) → 공시만
- 거래금액 및 조건이 당초보다 20% 증감할 경우
-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62

9. 주요 내용의 변경(Q&A)

현재 개정 진행 중인 공시규정 개정(안)

**Q. 거래상대방 중 일방의 자금·자산 거래 취소 시(100% 금액변경)
거래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A. 일방의 거래 취소는 해당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존 공시 내용의 거래금액이 20%이상 감소되는 주요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하고 공시를 해야 함

▶ **공시규정 개정(안)** : 거래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고 거래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사후 공시**하면 됨

가

III.

공시제도의 특례규정

1.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2. 상품·용역거래 특례



1.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특례

입법취지

금융보험업의 특성상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빈번히 발생하는
정형화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개별 거래건 마다 미리 이사회 의결이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

1.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특례

요건

1. 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3. 당해회사의 영위업종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일상적인 거래분야

“일상적 거래분야”란 당해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영위하는 영
업 가운데 비중이 높고 거래 빈도가 높은 거래분야를 의미

1.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 특례 내용(공시규정 제9조)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small>(3가지요건 충족, 공시규정 제9조 제1항, 제3항)</small>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p>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그 거래내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시</p>
2.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small>(공시규정 제9조 제2항, 제4항, 제5항)</small>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로 일괄하여 의결 가능 ▪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 의결 가능 2.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의결 후 상장법인은 1일(비상장법인은 7일)이내 ▪ 집행행위 후 상장법인 1일(비상장법인은 7일)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로 일괄 공시

1. 약관에 의한 특례 내용(공시규정 제9조)

요건

1. 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3. 당해회사의 영위업종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3가지요건 충족, 공시규정 제9조 제1항, 제3항)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거래내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시

2.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공시규정 제9조 제2항, 제4항, 제5항)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A)가 계열사인 금융·보험사(B)의 약관에 따른 거래를 할 경우, A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가 아니라면 거래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거나 금융·보험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음

2. 공시

- 일괄의결 후 상장법인은 1일(비상장법인은 7일)이내
- 집행행위 후 상장법인 1일(비상장법인은 7일)이내
 - ▶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로 일괄 공시

1.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공시규정 제9조】

▶ 특례 내용(공시규정 제9조)

구분	금융보험업 영위하는 회사	금융보험업 이외 사업 영위하는 회사
이사회 의결	X	O
		분기시작 전, 분기별 일괄의결 (수익증권의 경우 1년 이내의 거래기간별 일괄 의결)
사전 공시	X	O
		이사회 의결 후, 상장법인 : 1일 이내 이사회 의결 후, 비상장법인 : 7일 이내
실적 공시	O	O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	거래행위 후, 상장법인 : 1일 이내 거래행위 후, 비상장법인 : 7일 이내
		만기와 중도 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를 한 경우 ⇒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로 일괄 공시

1.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특례(Q&A)

Q. 금융보험사인 손해사정사 A사가 자신의 회사 직원의 퇴직연금 보증을 연금사업자이자 계열금융보험사인 생명보험사 B사에 가입하였다. 당해 회계연도의 납입 누적액이 50억 이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A사와 B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A. 당해거래는 약관법에 의한 약관 거래임. 손해사정사 A사는 금융보험사이긴 하지만, 퇴직연금거래가 **A사의 일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미의결 특례는 적용받지 못하고 **거래 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또는 비금융·보험사에 준하여 분기별 일괄 이사회 의결 특례 적용은 가능)

생명보험사 B사는 금융보험사이며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당해 퇴직연금거래가 **B사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사회 의결하지 않고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시하는 특례 적용 가능

1.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공시규정 제9조】

▶ 금융보험업 이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적용

구분	초단기 수익증권(MMF등)	기타 수익증권(CMA, 발행어음 등)
거래한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고금액기준 : 의결대상기간 내 총 누적잔액 (공시양식: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내부거래 기준(50억) 상회하는 예상 거래건수의 거래금액 누적합산 (공시양식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
사후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종료 후, 10일내 분기별로 일괄 공시 (공시양식 : 계열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분기별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행위 후, 상장사는 1일내 / 비상장사는 7일내 (공시양식 :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특수관계인과의 예·적금 거래 등 해당 양식)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입금액

71

2. 상품·용역거래 특례 【공시규정 제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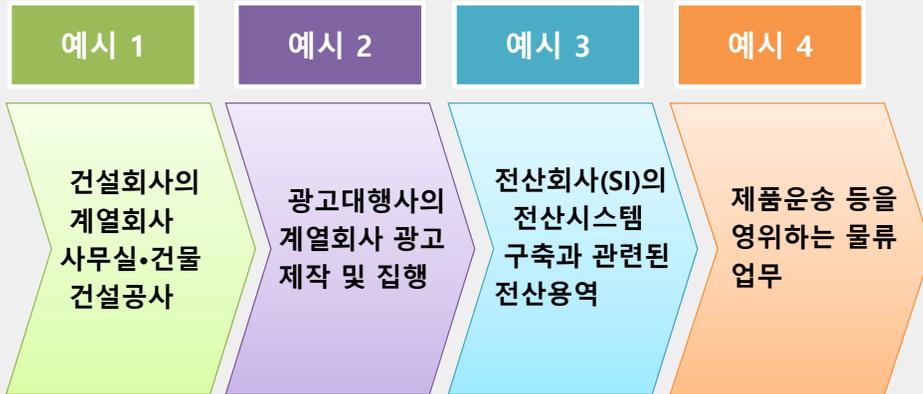
입법취지

1.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대상에 추가
2.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특례 제정

72

2. 상품·용역거래 특례

▶ 상품용역거래 유형



73

2. 상품·용역거래 특례 [공시규정 제9조의2]

일괄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이사회 의결 후 공시
변경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함 ⇒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거래금액 공시 <p>*단, 20%이상 증가 예상되는 경우 분기 중에 미리 이사회 의결 후 공시</p>

74

2. 상품·용역거래 특례 [공시규정 제9조의2]

분기 중 공시

-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 이사회 의결 후 공시

계약체결 방식공시

- 계약건별로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 후 공시
- 이사회 의결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건별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이사회 의결 후 공시

75

IV.

기타

1.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공시규정 제4조⑤)
2.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3. 참고사항

1.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의결 및 공시대상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등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새로운 거래 성립하지 않는 행위
(공시규정 제4조⑤ 제1호)

예시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상품·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결제

1.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공시규정 제4조⑤ 제2호)

예시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단, 장 종료 이후 시간외거래는 공시대상)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간 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 체결

1.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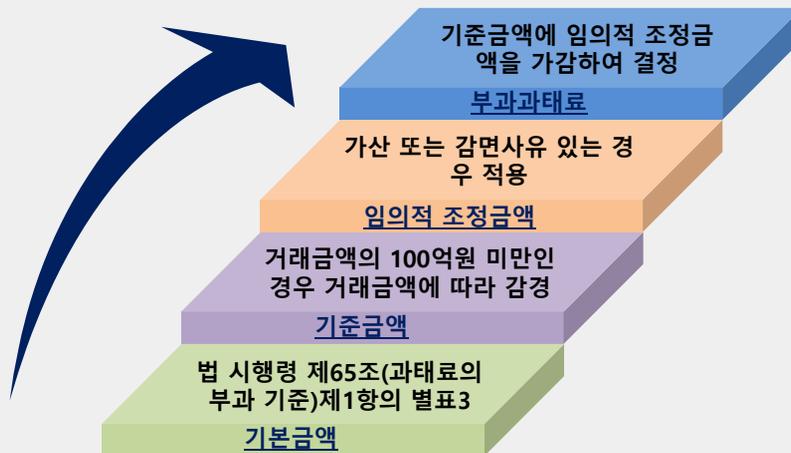
Q. 당사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로서 타계열사와 상품, 용역 거래를 하고 있으며, 당사는 상품, 용역 거래 공시대상이 아님.

당사는 타계열사로부터 외상매출금 수금을 계열 증권사의 CMA 계좌를 이용하고 있고, 외상매입금 지급 시 계열증권사의 CMA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A.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대금을 계열금융기관이 CMA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경우 상품용역거래에 수반된 **부수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의무 등 위반 시 가중·감면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2.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이사회 의결 여부	위반 유형			기본금액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누락 또는 허위공시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¹⁾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2,0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 지난 후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초과 불가)
		기한을 넘긴 경우	정확하게 공시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 초과 불가)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	정확하게 공시한 경우	5,0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7,000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1)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는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공시한 경우만 인정

81

3. 참고사항

- ▶ 관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제도 → 경제력집중 억제 → '내부거래공시주요질문답변'
- ▶ 상담은 가급적 **국민신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 민원신청 ⇨ [1단계]신청서 작성 및 유사사례확인(본인인증-신청인 기본정보작성-민원내용) ⇨ [2단계]기관 선택(공정거래위원회) ⇨ [3단계]신청완료

*1단계 본인인증-신청인 구분 체크시 반드시 **기업으로 표시하시고** 아래 기업명 기재
 **1단계 민원내용 중 제목란 기재시 질의하는 관련 공시를 제목란에 반드시 포함 기재 예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공시]◆◆◆

82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